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07년 12월 4일
발의자: 강태원, 이종호, 민경환,
이대원, 오용식, 이연구,
박영웅, 임 현

1. 제안이유

-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회의록 중 전자속기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록 작성·발간의 필요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)
-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함(안 제52조)
-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함(안 제53조)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

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회의록 작성·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을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제53조제1항 중 “그러나”를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(생략) <u>②발언자의 발언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(신설)</u></p> <p>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<u>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~④(생략) <u>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기 인쇄된 부수내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(생략) <u>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</u> <u>③회의록 작성·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<u>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을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…… …… … 다만, …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 ……….</p> <p>②~④(생략) <u>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